

「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8. 16(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1. 8. 30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11. 9. 2(금)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)

-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 -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함(신설)
-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 - 배수설비 설치완료 후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
-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 - 건물신축 등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³/일 이상 발생시 원인자부담금 부과
-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)
 - 분뇨의 수집·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 부과·징수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「하수도법」 및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하수도법」으로 통합되면서,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를 재 책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임.
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대지경계선 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로 규정하였고
 - 개별건물 신축 등 일정량의 오수발생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
 - 분뇨 수집 및 운반수수료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맞게 인상 조정하였음.

- 특히, 분뇨 수집 및 운반수수료는 1996. 11. 26이후 현재까지 인상을 제한하여 왔으나, 소비자 물가·평균임금 등 연평균 인상을 등을 감안해 기존보다 24.09% 인상하는 것으로
 - 소비자정책심의회(2010.12.29)의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
 - 본 조례 개정으로 「평창군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